2018학년도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항목 신·구 대비표(2018.3.)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제1장 제1조	이 규정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
제1장 제2조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운 인격을 형성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
	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	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학
제1장 제3조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을 규정한다.	
		<신설>
		제4조(구성 및 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
		생위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장 제4조		② '학생선도위원회 '는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
		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의결한
		다.
		· ④ '학생위기관리위원회 '는 부적응학생과 위기관리 대상 학생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이동>
		부록1 학생선도규정
제2장	제3장 학생생활 6조-17조	제2장 학생생활 5조-22조
	(기본품행)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기본품행) 학생들은 공동체생활을 위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
제2장 제5조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6조-7조		<신설>
		제6조(수업시간)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제7조(수업 외 시간) 학생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켜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
	①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	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2장 8조	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	
	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9조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타인의 개인 소유물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	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신설>
		제11조(학교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 하거나 행하지 않아야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11조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폭력전담교사
		3.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
		4.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5. 교내에 설치된 학생생활 신고함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3장 제10조(이성교제)	제2장 제12조(이성교제)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에 참여하여야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제2장 12조	한다.	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
		다.
	제3장 11조(동아리활동)	제2장 13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및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
	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	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2장 13조	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
	①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계발활동(클럽활동)의 특기·적성	는데 노력한다.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신설>
		제2장 15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봉사
71071 157		한다.
제2장 15조		② 청소 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
		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3장 제13조(용의복장)	제2장 16조(용의복장)
제2장 16조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	① 학생들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
	을 착용할 수 있다.	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남녀 학생의 복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복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학생 교복	1. 교복은 붙임의 동·하복 시방서를 참고한다.

<동.하복 시방서 참고>	2. 체육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체육복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2. 여학생 교복	부착물을 패용한다.
<동.하복 시방서 참고>	③ 두발 및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체육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체육복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1. 염색, 파마는 하지 않도록 한다.
부착물을 패용한다.	2.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안
③ 두발 및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1. 염색, 파마, 악세사리, 화장은 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송출연, 공연 참가, 기타사유(미용 등의 자격증 취득, 미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단정하	용실습 등)로 인한 두발의 변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한다.	여 학생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4. 두발 변형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두발규정을 준수한다.
	④ 용모 및 장신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모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도
	록 노력해야 하며 무색 입술 보호제,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2. 반지, 팔찌,목걸이, 귀걸이, 피어싱 등의 착용은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다.
	3. 유색렌즈 또는 써클렌즈 착용은 금지하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 소견이 있을시 착용할 수 있다.
	⑤ 신발 및 가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 보족한 굽, 금속 장식 등)
	2. 실내화(슬리퍼 등)는 교내 허용 지역에서만 착용한다.
	3. 가방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하되, 교과서가 들어가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시 역 6으로 한다. <신설>
제2장 17조	제2장 17조(기숙사 생활) 기숙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장 19조 제3장 15조(출결사항)	제2장 19조(출결사항)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출결상황관리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 및 교육부훈령을 바탕으로 하는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출결사항' 부분을 따른다.
		<신설>
		제20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음란물(음란미
-110-71 00-		디어, 음란서적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
제2장 20조		제 등), 흉기류(공구류 등) 등을 소지하거나 반입하여도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 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비행현장 등에서 생
		활지도를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에 순
		응해야 한다.
제3장	제3절 현장실습	제3장 현장실습
	제3절 18조 2항	<삭제>
	4. 등록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신설>
		제24조(보호자 협조 사항)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제3장 24조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
		대 책임진다.
		②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4장	제4절 정보통신 19조-20조	제4장 정보통신 25조-26조
		<신설>
		제5장 환경과 안전
제5장 27~29조		
		제27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

		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
		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28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1. 일반쓰레기
		2. 재활용품
		3. 음식물쓰레기
		제29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2.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3.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4.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제5절 학생회	<이동>
		부록3 학생회 회칙
		부록4 학생회 선출 규정
제6장	제4장 학생지도 35-38조	제6장 학생지도 30-32조
	제4장 학생지도 36조(진로지도)	<삭제>
	제2절 포상 - 제3절 훈육과 훈계	<삭제>
	제4절 상벌점제 - 제5장 징계	<이동>
		부록1 학생선도 규정
제7장		《신설》 제2차 보급한 단행 관련을
		제7장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신설>
	부록1 학생선도 규정
부록1 ~ 4	부록2 기숙사운영 규정
	부록3 학생회 회칙
	부록4 학생회 선출 규정